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3. 5 선고 2018가단1604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공호선

피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관

변론 종결2019. 11. 28.

판결 선고2020. 3.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4,221,5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6. 8. 8. 피고와 사이에 부천시 오정구 D 지상 2층 건물 중 1층 일부 662.78m²(2층은 피고가 사무실 등으로 사용한다. 이하 전체 건물은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임차목적물 부분은 '1층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6. 9. 20.부터 2018. 9. 19.까지, 보증금 7,386만 원, 차임 월 7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당초 이 사건 건물은 전체에 대하여 계약 전력 950kW의 전력이 공급되고 있었고 1층 건물에 대하여 별도의 분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데, 피고는 2017년 12월경 이 사건 건물 중 1층 건물에 대하여 계약 전력 250kW로 하는 분전 작업을 시행하였다.

다. 분전 작업이 이루어지기 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전체 전기요금에서 원고가 사용하는 1층 건물에 대한 전기요금을 별도로 계산하여 청구하였는데,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한 전기요금 합계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93,837,446원이다.

라. 한편 원고와 그 동업자는 1층 건물에서 당초 12대의 사출기를 운용하였는데, 2017년 가을경 동업관계의 변동 등에 따라 그중 5대의 사출기가 반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의 요지

원고는 1층 건물을 임차하면서 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380v 전압으로 200~300KW의 전력이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피고의 직원 E은 1층 건물에 300kW의 전력이 별도로 공급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220v의 전압으로 전체 건물에 계약 전력 950kW이 공급되고 있을 뿐이었고, 그 상태에서 원고에게 안분한 전기요금을 정하다 보니 다음과 같이 피고에게 합계 34,221,565원의 전기요금을 과다하게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1층 건물에 분전을 해 주겠다고 한 약속도 지키지 않다가 14개월이나 지나서야 이를 이행하였다.

2016년 10월	금 3,499,000원	금 1,769,688원	금 1,729,312원
2016년 11월	금 7,232,110원	금 4,035,814원	금 3,196,296원
2016년 12월	금 4,970,695원	금 3,226,747원	금 1,743,948원

2016년 10월	금 3,499,000원	금 1,769,688원	금 1,729,312원
2017년 1월	금 8,833,679원	금 6,056,775원	금 2,776,904원
2017년 2월	금 7,714,343원	금 5,137,686원	금 2,576,657원
2017년 3월	금 7,133,535원	금 4,064,755원	금 3,068,780원
2017년 4월	금 6,930,022원	금 4,494,049원	금 2,435,973원
2017년 5월	금 6,289,913원	금 3,994,353원	금 2,295,560원
2017년 6월	금 7,014,213원	금 6,470,996원	금 543,217원
2017년 7월	금 8,915,713원	금 5,648,930원	금 3,266,783원
2017년 8월	금 7,178,158원	금 4,238,918원	금 2,939,240원
2017년 9월	금 5,885,010원	금 2,930,522원	금 2,954,488원
2017년 10월	금 4,141,682원	금 2,100,143원	금 2,041,539원
2017년 11월	금 6,293,410원	금 4,229,258원	금 2,064,152원
2017년 12월	금 5,304,963원	금 2,986,935원	금 2,318,028원
합계 금액	금 93,837,446원	금 59,615,881원	금 34,221,565원

이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전기요금 차액 34,221,565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책임에 따라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피고가 1층 건물과 이 사건 건물의 전력 계약 현황이나 공급 방식 및 분전 작업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의 직원인 E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은 원고에게 380v 전압의 전기가 공급되고 있다거나 1층 건물로 계약 전력 300KW가 분리 공급되고 있다고 설명한 사실이 없다. 증인은 건물 전체에 계약 전력 950kW가 공급되고 있고 그중 300kW가 1층 건물에 안분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을 뿐이다. 또한 증인은 원고에게 전압문제를 변압기로 해결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의 비용으로 분전 작업을 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도 없다. 다만 원고가 전기요금을 연체하여 건물 전체가 단전될 위험에 처하자 부득이 피고의 비용을 들여 분전 작업을 한 것이다. 원고는 1층 건물에서 퇴거하면서 전기요금을 정산하였는데, 당시 과다하게 납부한 전기요금의 반환을 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계약 전력이나 1층 건물에

대한 분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로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1층 건물에서 당초 12대의 사출기가 운용되다가 2017년 가을경 그중 5대가 반출되어 7대가 남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사정변경에 더하여 작업량의 증감이나 전기사용 시간대의 변동 및 사용 전력량의 차이 등의 변수를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처음부터 1층 건물에 380v 전압으로 200~300kW의 전력이 분리 공급되었다 하더라도 34,221,565원의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태균